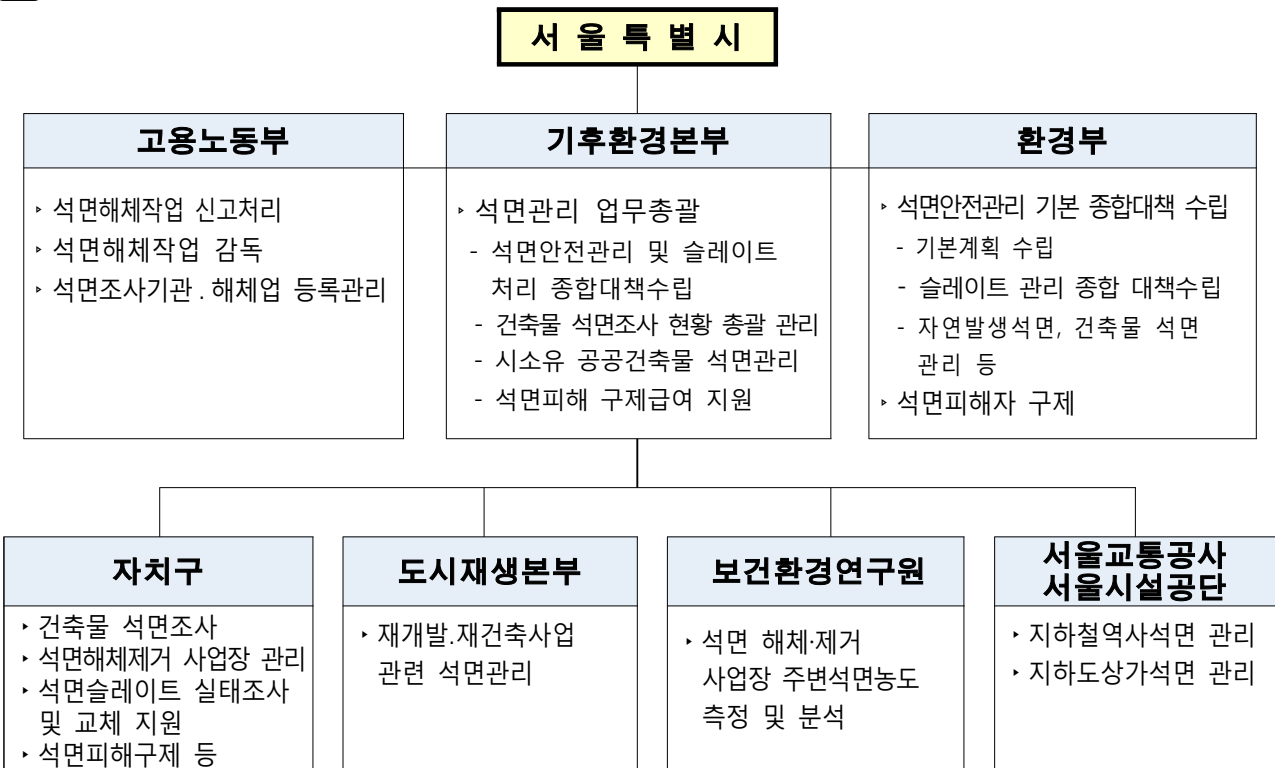


'18년 석면 안전관리 추진 계획

□ 추진방향

지속적인 생활주변 석면조사 및 제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중이용시설 석면조사 조기 실시·제거 병행 추진 ▶ 공산품 석면조사 및 석면함유 가능물질 취급장 지도·점검 ▶ 지하철, 지하역사 석면 제거 및 모니터링 철저 ▶ 슬레이트 지붕재 관리현황 실태조사 및 적기 교체
공기중 석면 비산 원천 차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관리강화 및 폐기물 처리과정 감시 ▶ 석면건축물 안전관리(市 소유 석면건축물 위해성평가 등) ▶ 생활주변 공기중 및 하천·공원 조경석 석면 비산 모니터링
건강민감군 건강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면 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질환자 피해 구제 ▶ 서울시 교육청과 협조강화로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제거 ▶ 건강민감군 이용 비규제 소규모시설 무석면 공간 조성
석면피해 예방활동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면건축물 관리 및 파손시 조치방법 안내·홍보 강화

□ 추진체계



1 지속적인 생활주변 석면제거 등 안전관리

□ 석면 건축물 관리 철저

○ 석면건축물 현황

(2018. 1월말)

구분	합계	공공건축물						대학교	다중이용시설	기타
		소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특수법인	지방공단	다중이용시설			
조사대상 건축물	8,768	3,808	2,111	536	215	101	860	1,448	2,972	540
석면건축물	3,060	1,489	879	274	125	36	175	735	706	130
무석면건축물	5,708	2,319	1,232	262	90	50	685	713	2,266	410

※ 기타 :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노인시설, 어린이시설, 기타 노유자시설

○ 점검기간 : 2018.2 ~ 11월

○ 점검대상 : 석면건축물 3,060개소

- 석면건축물에 해당하는 공공건축물, 대규모 다중이용시설 등 상시 점검
- 특히, 민감·취약계층 시설인 어린이집, 의료시설 등을 중점 점검

○ 점검내용

- 석면건축물에 대한 석면위해성 평가 실시여부(년2회)
- 석면건축물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실시여부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신고 및 석면안전관리교육 이수 여부
- 새로이 발견된 되는 건축물에 대해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석면조사 실시 여부 및 관리방법 안내

□ 지하철 석면제거, 모니터링 강화(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 지하철 역사 석면해체·제거

- 1~4호선 : 석면조사 완료('09년)
- '18년 해체·제거 계획 : 4개 역사(시청②호선, 영등포구청, 선릉, 종로5가)

※ '17년 제거 실적 : 1개 역사(을지로4가)

▷ 단열재, 흡음재, 건축 마감재, 닥트 연결재 등에 석면함유 자재 사용

- 5~8호선 : '13년 석면조사 111개 역사 해체·제거 완료('15년)

- 9호선 및 우이신설경전철 : 석면건축물 없음

○ 지하역사 석면 농도 정기 모니터링 (서울교통공사,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 대상 : 비산 우려가 높은 석면 뿜칠재 사용 4개 역사

※ 시청역(②호선), 선릉역, 삼성역, 영등포구청역

- 모니터링 횟수 : 서울보건환경연구원(분기 1회)

□ ' 18년 석면 제거계획 (서울시교육청)

○ 대상 : 163개교(482억원) ※ '17년 실적 : 97개교(291억원)

○ 방법 : 여름방학, 겨울방학 기간을 이용 학교별로 시행

※ '27년까지 석면 전량 해체·제거를 목표로 사업추진

□ 주택 슬레이트 지붕 해체·제거 및 교체

○ 추진목표 : 주택 30동 (사업비 : 142백만원)

○ 추진방향

- 자치구별 사업자 선정 추진(집수리사업(도시재생본부)과 사업 연계)

- 사회적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 우선 교체 지원

○ 추진방법 : 자치구별 계획 수립·시행

- 보조금 지원 신청(건축물 소유자) ⇒ 지원대상자 선정(자치구)

○ 지원금액 : 최대 500만원(철거비 200만원, 개량비 300만원)

구 분	철거비	개량비
사회적 취약계층 (기초생활자 및 차상위 계층)	최대 200만원	최대 300만원
일반가구	최대 200만원	최대 270만원 (자비 30만원부담)

※ 지원근거: 서울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

□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에 대한 관리 강화

○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 관리주체

구 분	작업장 내	작업장 외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석면안전관리법
관리기관	고용노동부	환경부, 지자체
관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면해체제거 신고 (주택 200㎡, 일반건물 50㎡이상) - 외부 석면비산방지 조치 - 작업자 건강보호조치(위생시설설치 등) - 작업장내 석면농도 측정 (작업 중 0.1개/㎤, 작업 후 0.01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면해체·제거 작업 공개 - 석면해체·제거작업장 주변 공기중 석면 비산 농도 측정 - 석면해체·제거 감리인 지정

○ 석면해체·제거 작업을 자치구 홈페이지에 공개

- 석면해체·제거작업 대상 명칭 및 주소지, 작업내용, 작업기간 등을 자치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

○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여부 확인 철저

- 대상 : 석면건축자재의 면적이 500㎡이상 사업장
- 방법 : 석면 해체·제거 사업자의 석면비산 정도 측정 확인(허용기준: 0.01개/㎤)
 - ※ 석면 해체·제거사업자는 부지경계선 등 작업 중 석면농도를 측정 결과를 자치구청장에 제출
- 측정주체 : 석면 해체·제거 사업자
- 측정결과 공개 :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 '17년 측정결과 공개 실적 : 사업자 측정공개 579회, 자치구 측정공개 45회
 - ※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장(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재정비 촉진사업장, 석면건축자재의 연면적5,000㎡ 이상 건축물(구청장 및 사업자 모두 석면비산 정도 측정)

2 석면 취약계층 건강보호

□ 석면질환자 피해 구제

- 추진근거 : 석면피해구제법 및 서울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추진내용** : 석면질환자유족(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미만성 흉막비후)에 석면 피해구제 급여 지급 및 석면질환자에 대한 홍보강화
 - 홈페이지, 병원, 자치구 등을 통한 대시민 홍보강화
 - 지급방법 : 신청자가 한국환경공단에 요청하여 심사를 거쳐 지급이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자치구청장이 지급
- **재원** : 석면피해구제기금(국비) 90%, 지방비(시·구) 10% 분담 지급
 - 시·자치구 분담비율 : 시 7 · 구 3(서울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건강민감군 이용 비규제 소규모시설 석면조사 용역 실시

- **대 상** : 소규모 비규제 학원 등 250개소 (430㎡ 미만 비규제 시설)
- **기 간** : '18. 3 ~ 9월
- **내 용**
 - 학원 등 석면 사용실태(석면자재 및 함유농도 등)조사 및 석면지도 작성
 - 석면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위해성 평가 및 석면제거 비용 산출 컨설팅 등
- **소요예산** : 47백만원
 - ※ '17년 추진실적 : 205개소 조사(조사결과 : 석면건축물 71개소)

3 석면피해 예방 소요예산 및 추진일정

□ 건축물 석면 관리방법 및 파손시 조치방법 안내·홍보

- 석면안전관리 매뉴얼 제작 배포
- 실내환경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cleanindoor.seoul.go.kr>) 활용
- 신규 석면조사 건축물 대상에 석면조사 안내

□ 소요예산 및 추진일정 : 불임참조

※ '18년 소요예산 및 추진일정

사업명	사업내용	예산 (백만원)	추진 일정			
			1/4	2/4	3/4	4/4
	총 계	529.3				
	소 계	262.8				
공공건축물 석면관리	시 소유 공공건축물 위해성 조사용역 시행 (대상 : 650개소)	97.5				
	석면분석 국제인증 및 석면분석시설장비 유지 정도검사비	57				
	시약, 초자, 소모품등 구매	61				
	학원건물 석면조사 및 석면 홍보 (대상 : 250개소)	47.3				
	석면슬레이트 해체제거	141.9				
석면피해 구제급여	석면피해 구제급여	124.6				